

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- 존경하는 황규복 위원장님과 그리고 선배·동료 위원 여러분!
안녕하십니까? 이 종 환 의원입니다.
- 이렇게 선배·동료위원님들을 모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게 되는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- 그럼 「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.
-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시설 감염병 예방조치를 위한 노력 의무와 체육시설 운영자에 대한 지원의 근거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「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」에 적용이 필요한 시점입니다.

□ 이에, 개정된 법률을 조례에 반영하여 감염병과 관련된 공중 보건 위기상황 및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일반이용자의 정의를 추가하고(안 제2조제14호 및 제15호), 시민이 체육시설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며(안 제4조), 감염병 확산 및 방역조치에 따라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신설하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.(안 제18조제2항)

□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